2004. 10. 18

인도네시아의 사업진출 유용정보

1. 수입규제사례
2. 관세 및 유통구조
3.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 사업진출 유용정보

<차례>

□ 수입규제사례 ····· 1
(1) 대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피소추이) ····· 1
(2) 주재국 수입규제 현황 ····· 1
(3) 수입규제 사례 ····· 2

□ 관세 및 유통구조 ····· 5
(1) 수입관리제도 ····· 5
(2) 관세제도 ····· 12
(3) 통관절차 ····· 16
(4) 유통구조 ····· 20

□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 21
(1) 투자유치정책 ····· 21
(2) 외국인투자제한 ····· 24
(3) 투자진출절차 ····· 25
(4) 자유무역지대 ····· 30
(5) 조세제도 ····· 32

참고자료 ····· 37

□ 수입규제사례

(1) 대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피소추이)

[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12월
피소건수	1	-	1	2	-	1	1	3 (조사중2)

※ 인도네시아는 96년부터 2003.6월 현재까지 한국에 반덤핑 제소 9건의 실적중 2003.12월 현재 인쇄 및 필기용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2) 주재국 수입규제 현황

○ 인도네시아는 일부 교역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고 일부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해 정치·경제의 혼란한 시기에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수입규제 관계당국(반덤핑위원회 : KADI) 담당자 면담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각국의 수입규제(주로 반덤핑) 추이에 따라 방어적 측면의 조치내에서만 시행한다는 입장 확인.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거 반덤핑 관세를 활용하여 교역국가 일방이 먼저 제소를 할 경우 보복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음.

(3) 수입규제 사례

○ 밀수근절 위해 쌀, 옥수수, 전자제품, 섬유류 등 8개 품목 수입 규제

- 쌀, 옥수수 등 8개 품목의 수입상에게 수입자 번호를 부여하여 매월 실적보고를 골자로 하는 법안(Decree No. 141/MPP/kep/3/2002)을 상정하고 2002.5월 중순부터 시행
- 대상품목 : 쌀, 옥수수, 콩, 설탕, 섬유·의류, 신발류, 전자제품 및 완구류
- 취득자격 : 상기 품목의 2년 이상의 수입실적, 수입허가(APIU/T/P) 보유업체
- 취득업체 의무규정 : 매월 15일까지 전월실적 보고(NPIK 등록번호, 물품내역, 회사명, 수입항구, hscode 번호, 수량, 가격, 원산지등 포함)
- 규제조항
  · 허가동결 : 실적보고 미이행 업체
  · 허가취소 : 실적보고서 허위기재/ 허가 악용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

○ 섬유·의류 79개 품목 대 인니 수출시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

- 시행시기 : 2003.6.10일부터
- 근거규정 : Ministry of Industry & Trade No.276/MPP/kep/4/2003
- 예외규정 : 인니신발협회(APRISINDO)의 요청에 따라 개정령(Ministry of Insudtry & Trade No.389/MPP/kep/4/2003)을 통해 선적전검사 예외규정 발표

<선적전검사 의무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세지역 및 Sabang 자유무역지대로 수출되는 섬유 및 섬유제품

· 신발원자재 10개 품목

HS CODE	품목명
5407.20.100	Unbleached Woven Fabrics(Polypropilene, Polyester)
5806.32.190	Webbing tape/Gathering Polyster
5806.32.900	Webbing tape/Gathering Nylon
5808.90.100	Gore
5903.10.000	Textile Fabrics(Polyvinyl Chloride)
5903.20.000	Textile Fabrics(Polyurethane)
5911.32.000	Textile Fabrics and Felt (중량 650g/sm)
5911.90.000	Filter Cloth
6001.10.990	Goretex Lining
6307.90.900	Velcro

○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

– 섬유제품, 직물

섬유제품, 직물은 인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가득율이 높아 인니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보호하고 있는 산업. 인니정부는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차별화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섬유사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0~10%로 낮게 부여하고 있으나, 자국에서 제조되어 여타 경쟁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잇는 직물, 의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 25%, 부가세 10%등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음. 특히 2002년 10월 발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 및 의류 내수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섬유제품의 가공업체만이 섬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기·전자

인니 정부는 전기·전자 분야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품 등 수입원자재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고 수입관세도 비교적 낮으나 인니 자체생산 전기·전가 제품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는 40~5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화학제품

96년부터 인니 정부는 자국 화학산업의 보호 및 자체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입 에틸렌 및 프로필린에 대해 기존 관세 이외에 2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에틸렌, 화학원료, 윤활유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독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례가 사실상 간접적인 수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철강제품

2002년 11월 인니 정부는 저가의 외국산 철강제품의 대거유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 철강 제조업체가 철강제품 원부자재용 이외의 용도의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장관령을 발표. 동 철강제품 수입업체 제한조치는 인니내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20~25%로 인상한 이후 1주일 만에 이루어짐. 그러나 2004년 들어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현상이 일자 2004.4.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냉연강판(관세율25%), 열연강판(관세율20%)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함

□ 관세 및 유통구조

(1) 수입관리제도

○ 수입관리제도

1)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음. 90년대 중반이후 변화상황을 보면 인니 정부는 1995년 대대적인 수입규제 완화책을 발표함으로서 인니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총 9,398개 품목의 64.1%에 해당하는 총 6,03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하였으며 1996년 1월에는 주로 수출지향적 산업분야인 자본재 및 원자재 428개 품목에 대해 5~20%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였음

또 인니 정부는 1997년 11월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동 계획의 일환인 관세 인하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교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2003년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우선 1998년 스틸렌(수입관세율30%) 및 폴리스틸렌(30%)의 수입관세율을 25%로, 폴리필렌(40%) 및 폴리에틸렌(40%)의 관세율을 30%로 인하함과 아울러 에틸렌(25%) 및 프로필렌(25%) 등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00년까지 20%로 인하하였고 2003년까지는 10%이하로 낮추기로 함.

1999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200%에서 배기량에 따라 65%~80%로 크게 인하하였음. 2003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5%인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성기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

동실효특혜관세(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음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 농산물 등이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곡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이상일 것이 요구됨

2) 수입관세 과세가격 산정상의 불합리

관세 평가가격을 세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관세 부과 기준가격 산정의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수입부가금등

수입과 관련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는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수입, 판매, 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어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110% 부가가치세 외에 사치세를 부과함 (에어컨 및 냉장고의 경우 10~15%의 관세 외에 20%의 사치세 부과)

4) 통관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1997년 4월 수입후 검사제도 (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 은행, 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 많이 개선되었으며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문제시 되고 있음

5)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 환급 신청시 요구되는 정도임

6)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함. 수입금지나 수입쿼터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7) 수입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환경관련 유해물질(폴리머에틸렌 등), 오전파괴물질, 납폐기물, 중국어 표기 인쇄물 등임. 그러나 납폐기물, 중국어 표기 인쇄물의 경우 특별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함

8) 반덤핑상계관세

인도네시아는 반덤핑 제소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 모든 무역관련 규정이 해당부처의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규제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무장관이 즉각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서 제재가 가능했기 때문임. 그러나 1996년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위원회 관계규정이 정비되고 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섬유, 주석판, 철강 등 인니 국내생산 제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9) 수입허가

허가제와 쿼터제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1990년 1,112개에서 1994년 261개로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166개로 축소되었음. 수입허가 목록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된 수입업자 취급품목(33개) : 주류 및 음료수류 27개,
공구류 6개

② 생산하는 수입업자 취급품목(71개) : 인조설탕류 3개,
프로필렌류 2개, 엔진 및 펌프류 5개, 트랙터류 3개,
전자키보드류 1개, 절단 금속류 57개

③ 승인 수입업자, 대리점 취급품목(47개) : 오토바이류 47개

④ 국영석유회사 PERTAMINA 취급품목(3개) : 윤활유 3개

⑤ PT.Multi Nitrotama Kimia 취급품목 (4개) : 화약류 4개

인도네시아 측은 WTO에 국영 무역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약속(2010년까지)

10) 주요품목에 대한 검역, 검사시의 수입허가 요건

- 과일 : 보건증명서 및 과실파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첨무(신선한 과일은 수입전에 37°F에서 17일 이내 기간 동안 저장된 것이어야 함)
- 감자 : 보건증명서 및 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 특정동물 : 인도네시아 수의부의 검사증명서 첨부
- 가축 : 수출국의 가축보건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규칙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10~14일 이내 검역 실시(소는 도살용과 번식용으로 나누어서 수입허가)
- 마늘, 완두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추출용 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찌꺼기, 가공되지 않은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주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 음료 :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허가 필요
- 비료, 살충제 및 살균제 : 농업부나 관계기관의 실제사용 검사를 거쳐야 함(검사기간은 18개월 가량)
- 인공 감미료 : 보건부의 특별 수입허가 필요
- 아편 및 마취제 : 보건소의 증명서 첨부
- 조제약품(항생제, 인슐린, 진단시약, 액체주입물, 샘플형태의 일부 항생제) : 보건부의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동물용 의약품 : 수의부에 등록 필요

- 피하주사바늘, 무수초산, 아편파이프 :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화장품 및 위생품 : 등록, 포장, 상표 및 광고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어야 함
- 가공식품 및 기타 수입 식료품 : 보건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 컬러복사기 및 기타 수입 식료품 : 보건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 통신장비와 전기제품(무선통신 및 전송장비, 앰프, 카세트 녹음기, 냉장고, 재봉틀, 라디오세트, TV세트, 에어콘, 선풍기) : 해당 주무 장관에게 완전 분해된 부품목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 필요
- 중고기기 및 장비 : 특정조건에 부합해야 함
- 화기 및 탄약 : 국방부의 특별허가 필요
- 고등교육기관, 훈련기관, 정부기관 등의 교육용 과학서적 : 교육, 무역 또는 문화부의 특별 수입 허가 필요

○ 수입관행

1) 수입대금 결제관행

원칙적으로 외환에 대한 통제가 없어 수입대금 지급에도 대부분 제한이 없음. 결제방법은 국제상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

<결제방법>

- 신용장
  - · At Sight L/C
  - · Usance L/C
  - ※ Merchant L/C는 사용이 금지됨
- Advance Payment
- Condignment
- Open Account
- D/P 혹은 D/A
- 기타 국제무역상 인정되는 거래로써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른 결제

※ 이상에 따른 결제방법은 62개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모두 인정되고 그 외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At Sight와 Advance Payment만 인정

<결제 통화 및 환율>

- 미화 및 일본엔화 등 20여개국의 지정통화
-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변동환율제로 운영하며 매일 중앙은행에서 기준 환율 고시

<외환관리제도>

-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관장하여 외환, 금융전반에 걸쳐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여 외환의 취득, 처분, 송금 및 수취가 비교적 자유로움
- 중앙은행은 Basket System에 의거 기준환율을 고시
- 외환의 송금에 대한 각종 세금부과를 철폐함

2) 수입품의 개략적 유통구조 및 단계별 마진율

인도네시아의 유통구조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항만시설 등이 불충분하여 전국적인 상업 네트워크는 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그 외 도서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경제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편임. 외국상사들은 '유통구조의 민족화'의 관점에서 수출입 및 국내 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상사의 지점은 판촉 및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업무만 할 수 있음.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 수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있음.

간접수입의 경우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기관, 등록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하게 되므로 2~10% 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 규모의 유통업체에 인도함. 여기에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가 약 30%의 마진을 붙이게 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 또는 Detail Price는 수입가격(CIF) + 수입세 + 부가세 + (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 + Handling Charges + 기타 경비(각종 금융수수료 및 보험료, 리스크 부담률) = 총수입가 200%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통 총수입가의 50~100% 이상의 유통 마진을 예상기대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2) 관세제도

○ 관세의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음. 수입관세율은 인도네시아 전 관세지역에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아세안 특혜관세 외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아세안 국가들은 1978년 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 PTA)에 의해 19,000개 품목에 대해 우대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간에 실질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품목은 PTA 적용품목의 15%에 불과함. '93년 1월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추진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CEPT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음. HS제도 도입과 함께 수입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위축된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관세율

1)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및 평균 관세율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1995년 5월 대대적인 수입규제 완화책을 발표 인니 관세율표상 기재된 총 9,398개 품목 중 64.1%에 해당하는 6,03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함.

또한 인니정부는 1997년 11월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동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2003년까지 1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품목 중요도에 따른 차등 관세

구분	품목	적용세율
상급필수재	쌀, 밀, 곡물, 면, 철 및 철강제품, 화학제품, 의료용품, 산업용기계, 장비 및 원자재	0~10%
중급필수재	일부 원자재 및 산업용 부분품	20~40%
하급필수재	입규제 중인 현재 생산제품	50~70%
사 치 품	소비재 및 현지 생산제품	200%이내

3)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33%로 15%인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임

4)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가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한편,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싱가폴을 경유하는 선박에 일단 선적을 하고 싱가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 방식

HS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수진이었으나, '8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음.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전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관세부과는 CIF가격 기준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 관세율 × 관세 환율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하나 금액

2)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 가격기준으로 U$ 5,000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
- U$ 5,000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

○ 관세 환급제도

1)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임. 종전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유예가 가능하므로 (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통관이 됨. (수출 신고시 완전 해제)

2)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환급대상 제외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3)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 Form E)
· 수입증빙 서류
·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 최종 수출품 검정
Surveyor가 검정한 후, Export Clean Report of Finding (LKPI)를 발급하는데 Surveyor는 정부가 지정하고, 재무성을 대신하여 SUCOFINDO (SGS Agent)가 검사하도록 되어있음
– 환급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 환급승인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 P4BM이 3부 작성
원본 : 신청인
1부 : 국영은행
1부 : 예산국장에 송부
– 환급금 지급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 원산지 규정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수출시 GSP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지 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60%임.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후 관세 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임

(3) 통관절차

○ 수입 화물의 운송과 통관

<절차>

① NEGO BANK에서 POENING BANK로 선적(NEGO) 서류 발송

② 수입자는 ORIGINAL NEGO 서류를 OPENING BANK로 받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COPY받아 PIB(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OPENING BANK)에 수입 관세를 납부 후 L/C 대금을 정산

③ OPENING BANK로부터 선적서류와 PIB 기재 내용을 확인

④ 기타 통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업체에 양도

⑤ 통관업체에서는 양도받은 통관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이 끝나면, (수입화물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입관세의 면제 쏘는 감세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BAPEKSTA나 BKPM의 관세 혜택 관련 서류를 통관시 첨부함)

⑥ 세관에서는 통관 확인 서류를 통관업체에 발행(SPPB)하며, 통관업체는 PORT CHARGE등 관련비용을 납부 후, 항만청으로부터 D/O(TILA)를 발급

⑦ 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

⑧ CY 또는 보세 창고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⑨ 수입자의 공장 또는 창고로 운송

⑩ 통관 업체에서는 수입 통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자의 비용에 첨부함으로써 수입의 모든 과정이 종결됨

○ 수입통관 관련 서류

① OPENING B/L :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OPENING BANK의 배서가 되어야 하며, 포워드 또는 선사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는데 사용

② PIB (Pemberitahuan Impor Barang-수입화물신고서)
수입자가 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작성하며, 수입화물의 명세 및 관련 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세금은 은행에 납부 후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PIB는 가장 중요한 수입통관 서류 중에 하나로 작성시 물품가, 운임, 화물 중량, Container 등 오류 없이 작성

③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④ Original Insurance Policy

⑤ 세금납부 영수증(SSP, SSBC-수입관세, 부과세, 수입소득세에 대한 영수증)

⑥ Original SKB (Surat Keterangan Bebas Pemungutan Pph 22)
일반적으로 수입소득세는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투자의 경우 납부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 수입건마다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면세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임

⑦ Tanda Terima Bapeksta (Bapeksta의 Facility를 사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⑧ Skep Facility Bapeksta Copy (Bapeksta로부터 Facility를 받은 확인서) D/O(Delivery Order)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은 종류에 따라 수입통관 서류의 일부가 추가될 수 있음

○ 수입 통관 절차

현재는 Jakarta 지역 세관(TG. Priok, Sukarno-Hatta)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이 갖춰져 있어 수입자나 통관업체와 Computer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서는 PIB를 작성하여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 PIB 내용을 세관 Main Computer 로 전송하면, 세관에서는 전송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연결된 Computer를 통하여 SPPB(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화물통관 확인서)를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 전송, 통관업체에서는 SPPB를 받은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화물을 인수함

(참고) : 현재 인도네시아 통관 규정상 1건의 통관 서류상에 수출용 원·부자재 일지라도 수입화물의 종류가 5 Item(H.S. No 기준)이상이거나, 일반소비재(내수판매용)는 필수 검사 품목(Jalur Merah)으로 지정하여, 화물 확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자들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르고 관할 세관마다 시행에 차이가 있어 수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수입 통관 관련 비용

① Ocean Freight : CIF나 C&F는 수출자가 지불하거나 FOB의 경우는 선사 TARIF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

② Terminal Handling Charge : US$ 100,-/20' US$ 155,-/40'
US$ 16~26/CBM

③ IPA (INTER ASIA) : US$ 8,-/20' US$ 12,-/40'
US$ 12,-/40HC US$ 15,-/45'
(USA, Europe) : US$ 12,-/20' US$ 18,-/40'
US$ 18,-/40HC US$ 23,-/45'

④ D/O Charge : US$ 20,-/DO
⑤ Custom Clearance Charge : 통과 대행 수수료로 포워드나 통관업체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음
⑥ Port Storage & Lifton : DIR Rp. 40.000,-에서 60.000,-정도이나 통관, 운송이 지연될 경우 Port TARIF에 따라 Surcharge가 붙음
⑦ Lift Off & Cleaning Charge : 선사 및 Depot마다 차이가 있음
⑧ 운송료 : 지역에 따라 운송요율 적용
⑨ 항공 화물의 경우 창고료의 적용은 공항 창고의 TARIF(US$)에 따라 적용
⑩ 기타 Container Repair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외비용이 필요하며, 세관원 Case By Case NEGO

○ 통관 소요 기간

기본적으로는 통관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통관 완료 후 Delivery 하고 있으며, JALUR MERAH(화물 검사 품목으로 지정)에 해당될 시 화물 검사 소요기간이 1~2시간 필요함.

(참고) : 상기 내용은 보세구역(EPTE)내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일반 공단 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업체는 공장에서 수출, 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세관원이 공장에 상주), 부두의 세관에서는 단지 신고 절차만 거치고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함

(4) 유통구조

○ 유통단계

1) 유통구조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며 수입상이 중간 유통구조를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형백화점이 직접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입상들은 직접 도매까지 겸하는 등 중간상인을 배제하면서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2) 유통단계

수입상이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 소비자 판매형태를 거치므로 도소매상간의 유통단계는 배제되며, 전문수입상이 수입을 할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됨

□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1) 투자유치정책

○ 개요

1)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2) 1970년 개정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3)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영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년도	주요 개정내용
1977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관련 행정총괄전담기구 (투자조정원 : BKPM) 설립 ※ BKPM기능 : 외국인 투자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분야 선정 등
1989	-외국인 투자규제방식 변경 (Positive->Negative)
1992.4	-특정조건하 100% 외국인 투자 허용
1992.7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의 축소 (60개->51개) -투자금지분야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부동산 소유기한 연장 (10년->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 허용 -외국인 투자시 취득허가증 종류 축소 (8개->4개) -토지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5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소유 상한 확대 (49%)
1993.6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축소 (51개->34개 업종)
1993.7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감면혜택 폐지
1993.10	-100%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1994.6	-지분 양도의무 폐지 -100% 지분 소유가능지역 확대 (14개주->전국) -외국인 단독 투자시 최저자본금(5천만불) 규정 폐지 -합작투자시 지분소유한도 확대 (80%->95%) -합작투자범위확대 (금지되었던 SOC 부문중 9개 부문 합작투자 허용) -영업허가기간(30년) 연장수속 간소화
1995.5	-외국인 투자금지품목 축소 (팜유, 의약품 등 10개)
1996.1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허용)

1996.6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직물 수출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 상품교류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징금 폐지
1997.7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내 경매회사 설립 허용 -BKPM 면허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1998.6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1998.10	-은행법 개정안 의회통과 ·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외자출자규제 철폐 (100%자유화) · 은행설립 인허가권 (재무부->중앙은행)
1999.1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 발표 (최장 8년간)

○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 투자 소득세 면제법령 내용

1) 개요 : 인니정부가 지정한 22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시 소득세를 최장 8년간 면제
2) 근거 : 대통령령 No.7/1999 (1999.1.14)
3) 세부내용
   - 기본 : 자바 및 발리지역(3년), 기타지역(5년)
   - 추가 : 종업원 2,000명 이상 고용시(1년)
     동 투자에 인니 중소기업이 20%이상 지분확보시(1년)
     총 투자금액(대지 및 건물제외) 2억불 이상(1년)
   - 정부지정 첨단산업 분야
     · 섬유 : Fiber, Yarn, Spinning, Weaving
     · 피혁 : Nubuck Leather
     · 화학 : Soda Ash, Olefins & Aromatics Phenol, Bis-Phenol A, Poly-Carbonate, Acrylonitrite, Butadiene, SBR, MTBE, Caprolactam, Aniline, Antibiotic, Vitamin C from Sorbitol, Niacin, Adipic Acid, HMDA
     · 석유시추 : Crude Oil
     · 철강 : Pellet, Sponge, Pig Iron, Ferro Alloy

- 기계류 : Turbine & Parts, Internal Combustion Motor, NC/CNC Machine Tools, Machinery & Equipment for Gas & Oil, 기타
- 자동차 : Engine Block, Crank Shaft, Cam Shaft, Connection Rod, Cylinder Head, Injection, 기타
- 전자 : Semi Conductor, CDT, CRT, LCD, Miniature, Batteries Pack, Multimedia Components, 기타

○ 투자금지 분야 리스트

1) 근거 : 대통령령 No.96/1998 (1998.7.2)

2) 투자전면금지분야(내국인 포함)

— 1차산업

- Cultivation and processing of marijuana and others of the same type
- Utilization and exploitation of sponges
- Contractor service in forest logging
- Uranium mining

— 2차산업

- Manufacturing of penta chlorophenol, dichloro diphenyl trichloro ethane (DDT), dieldrin, chlordane
- Pulp industry with sulfide processing and pulp industry with chlorine recovery
- Chlorine alkali industry with mercury processing
- Chloro fluoro carbon(CFC/freon) industry
- Cyclamate and saccharin industry
- Processing of finished/semi finished products of mangrove wood
- Strong drinks/alcoholic drinks
- Firecrackers and fireworks
- Explosives and components

· Fire arms and components
· Printing of valuable papers : postage stamps, duty stamps, bank indonesia securities, passports, stamped postal matter

– 3차산업
· Casino/gambling business

(2) 외국인투자제한

○ 외국인 투자금지분야
– 1차산업
· Fresh water fish culture
· Forest concession

– 3차산업
· Taxi/bus transport
· Local shipping
· Rental trade and trade of same type
· Domestic trade supporting business
· Private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radio broadcasting services, newspapers and magazines
· Film business and movie house operation
· Management of the radio frequency spectrum and satellite orbit
· Trading services and trade supporting services except : large-scale retail trade(mall, supermarkets, department stores, shopping centers), large-scale trading activities (distributors/wholesalers), restaurants, quality certification services, market research services, and after sale services
· Medical services : public clinics, maternity clinics, specialist clinics, and dental clinics

(3) 투자진출절차

○ 개요

먼저 외국인은 투자 신청전 투자금지 및 규제업종을 참조하여 투자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조정 위원회(BKPM)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대통령에게 투자인가여부 요청
- 대통령의 인가/비인가 증서 BKPM에 전달
  · 단 US$ 1억불 미만인 경우 BKPM장관 승인사항임
- BKPM, 대통령 결정사항을 투자가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사본을 관련 정부부처에 송부
- 대통령의 투자승인서를 BKPM으로부터 전달 받은 투자가는 수입코자 하는 자본재, 기초재, 부자재 등에 대한 Master List를 작성, BKPM에 제출
- 동 Master List 검토 후 BKPM은 설비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
- 투자가는 정상조업 개시후 BKPM에 공장건설 상황보고(연 2회) 및 생산 상황보고(12월말 1회)를 해야 함

○ 투자허가 신청 절차

1) 투자허가 기관 : BKPM(Investment Cordinating Board)
2) 구비서류
   - 신청서(BKPM양식 : Model I/PMA) 기재
     · 신청인(업종) 및 회사명
     · 연간 생산 및 판매계획
     · 위치 및 공장부지 면적
     · 고용계획
     · 건축일정 및 계획
     · 자금계획
     · 자본금 조달 및 구성

- 첨부서류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Deed of Establishment of PT. PMA
  · 외국인회사의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 양측회사의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인니회사의 세금납입자 번호 (NPWP)
  · 합자 및 기술협력 약성서 (기술협력약정서는 의무사항이 아님)
  · 생산공정 설명서 및 도해
  · 공해방지 및 안전설비계획 (유해물질 생산의 경우)
  · 양측회사의 Bank Reference
  · 외국 수입업체와의 매매계약서 혹은 매매약정서 (수출지향기업의 경우)
  · 기타 BKPM이 요청하는 서류

3) 투자허가 절차
- Negative List 검토 및 확인
  · 투자금지 및 제한, 장여여부 검토
- BKPM에 투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BKPM, 대통령에게 투자인가여부 요청
  · 단 US$ 1억불 미만인 경우 BKPM장관 승인사항임
- BKPM, 투자관련부서 및 재무부에 동 신청서 사본 송부, 대통령의 인가/비인가 증서 BKPM에 전달
- BKPM, 투자자에게 대통령의 결정사항 통보
- BKPM, 대통령 결정사항 관련사본을 다음기관에 송부
  · 투자관련 정부부서(Ministries subordinating the capital investment business fields concerned)
  ·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국가토지관리청(The National Agency for Land Affairs)
  · 1급지(first level region)의 Governor/Head 지방투자조정위원회(BKPMD)가 location license를 발급했을 경우

- 대통령의 투자승인후
  · BKPM은 관련장관을 대신해 다음사항을 발급함
    제한수입자 번호(The Limited Importer's Identification Number), 설비에 대한 조세 및 관세경감에 관한 결정(The Decision on the Granting of facilities/tax and import duty relief), 외국인 근로허가증(The working license required for expatriates), 영구 사업허가증(The permanent business license)
  · 1급지 Governor/Head는 국가토지관리청이 마련한 거주허가증(location license)발급
  · 국가토지관리청 또는 지방토지관리청은 규정에 의거 사업운영 및 빌딩 건축에 대한 land title 발급
  · 2급지(second level region)의 Regent/Mayor는 빌딩건축 허가증 및 Nuisance Act License 발급
- 대통령의 투자승인서를 BKPM으로부터 얻은 후 투자자는 수입코자 하는 자본재, 기초재 및 부자재 등에 대한 Master List를 작성, BKPM에 제출
- 동 Master List 검토후 BKPM은 설비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에 대한 결정사항(Decision on facilities/relief of import duty and other import levies)을 통지
- 프로젝트확장 등을 포함, 이미 승인을 득한 자본투자계획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발생시 투자자는 BKPM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BKPM에 신청을 함
- BKPM에 공장건설 및 생산상황 보고
  · 정상조업 개시후 BKPM에 공장건설 상황보고(연2회) 및 생산상황보고(12월말 1회)를 해야 하고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외화투자 이행 결과 보고를 해야 함
- 건물건축 및 사업장허가 취득
  · 건물건축 허가증(IMB)
    발급기관 : 해당지역의 장
    허가증 발급소요일수 : 신청서 접수후 7~14일 이내

허가후 12개월 이내에 건물건축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 동 시한은 해당지역의 장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 연장 가능

· 사업장 허가증(UUG)
발급기관 : 해당지역의 장
허가증 발급소요일수 : 신청서 접수후 35일(Work day)이내
사업장이 어명 및 공해배출 등 환경오염 업체로 판단될 경우 환경관리 규정에 관한 법 No.4/1982에 의거 규제를 받음

○ 현지법인 설립

– 회사의 종류

외국인투자법인은 유한책임회사(PT : A Legal Entity with Limited Liability Shareholders)의 형태로 하여야 함

– 투자유형

'94.5월 규제완화 조치로 최소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일부 예외분야 있음)가 허용됨

– 회사설립

· 설립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허가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함
· 주식발행은 수권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권자본금의 최소(발행자본의 10%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 설립자본은 직접투자와 차입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중 외국인 투자지분에 속하는 차입자본은 해외차입이어야 함
· 설립자본금중 차입자본비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4수준까지 허용되고 있음
· PT의 설립은 공증인이 발행하는 법인 설립증서에 의해 추진가능하며 법무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지방법원에 등록되어 관보(State Gazette)에 공고됨
· PT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General Shareholders

Meeting),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감사회(Board of Supervisor)로 구성되며 정관상에 주주총회는 최소한 연 1회 개최토록 명시되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회사설립법 및 법무부 규정상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감사를 두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 기존의 내국인회사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대상 내국인 회사의 업종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분야여야 함

○ 지점 및 사무소 설립

– 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은 현지법인이 기진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설립과 새로이 지사를 설립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

– 현지법인이 기진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사 및 사무소의 설립 허가는 투자조정위원회(BKPM)가 함

– 새로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역성(Ministry of Trade)이 허가 업무를 관장

– 지점 설립 절차

· 소요기간은 통상 1~2달 소요

· 하기서류를 갖추어 외무부 영사과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주한 인니대사관에 신청

· 준비서류 : 지사설립취지서, 지사장 위임장, 지사장 임명장, Financial statement, 주거래은행 추천서

· 주한인니대사관 소정소류를 제출

· 소정서류 : Surat Keterangan, company profile, letter of intent, power of attorney, personal profile, financial statement, article of incorporation

· 동 신청서류는 인니대사관을 통해 인니정부로 송부(무역성/이민국)

(4) 자유무역지대

PT. (PERSERO) KAWASAN BERIKAT NUSANTARA

○ 소재지 : 1. Cakung, Jakarta
2. Tanjung Priok, Jakarta
3. Marunda, Jakarta

○ 면적 : 1. Cakung 173 ha
2. Tanjung Priok 12 ha
3. Marunda 198 ha

○ 개발업체 : KBN

○ 토지임차 가격 (수출 가공지역 내)
1st floor : USD 3.5/Sqm/month
2nd floor : USD 3.25/Sqm/month
Service Charge : USD 0.10/Sqm/month form total leased building.
(10%부가세 및 land & building tax는 별도)

○ 토지 및 건물 현황

SFB Cakung	:	11.950 M2
SFB Tanjung Priok	:	11.950 M2
SFB Marunda	:	11.950 M2

Total		35.850 M2

○ Land and building Certificate : 15년 계약 및 연장가능

○ 공단 내 입주 업체 수

Cakung	:	120 Company
Tanjung Priok	:	10 Company
Marunda	:	5 Company

○ 교통/위치
From Soekarno Hatta Intl Airport : +40km or +30Minutes
From Tanjung Priok Harbour : +5km or + 10Minutes

From Central Business District : + 15km or + 25Minutes

○ 전기 공급 : Supplied by PT. PLN the stated owned electricity company
Total Capacity : 42,6 MVA
Industry Tariff :
Peak Hours 0~200 KVA : Rp. 125/KWH
200~30.000 KVA : Rp. 140/KWH
30.000 KVA : Rp. 135/KWH
Connecting fee : Rp. 200/VA

○ 통신 :Supplied by PT. TELKOM, the stated owned company
Total Capacity : 1500 lines
Consumption fee : based on PT. TELKOM tariff
Connection fee : Rp. 450.000/ line

○ 공업용수 : Distributed by PT. PAM JAYA, stated owned company
Total Capacity : 3000 m3/day
Consumption fee : Rp. 3.650/m3
Connection fee : ----------

○ 인적자원 : Minimum wages regional Rp. 590.000/month

○ 외국업체 입주현황 :

Korea	36	Malaysia	2
Taiwan	20	Italy	1
Japan	1	Singapore	4
Hong Kong	14	India	3

○ 중앙 폐기물 처리 공장 및 수질 허용 범위 : Not available

○ 기타 건물 관련 규정 :
Standard factory building on the additional that any alterations by lessee need to have approval from the owner (KBN)

(5) 조세제도

○ 조세구조

1) 현행세법은 1984.1.1부터 시행되고 있음
   - 총칙 및 절차법 (법 No.6)
   - 1991.12.31 개정 소득세법 (법인 소득세 포함)(법 No.7)
   -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법 No.8)
2) 과세방법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 이자, 자유직업소득, 특허권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동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3) 조세체계는 국세, 지방세 및 관세로 구성
   - 국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매출세, 인지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 지방세 :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라디오포함), 유흥세 등
   - 관세 :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시에 과세

○ 세법근거

1) 이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시행해 왔던 복잡한 조세제도와 지방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정
   - 1984.1.1 일반세법과 절차법을 규정한 No.6과 No.7에 의하여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시행
   - 1991년에 No.7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85년 No.8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와 사치품매출세로 분리
   - 1986.1.1에 토지, 건물에 과세하는 No.12 재산세법, No.13 인지세법을 시행
2) No.6, 7 및 8을 개정하여 신고납부제도로 개정하였으며,
   - 정부의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은 관할세무서에서 실시
   - 과세결정 및 일반 행정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법규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

○ 조세행정조직

1)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소득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납세자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다음 열거한 사업자는 제외됨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자
   - 소득금액 과세미달자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 불복제도

1) 납세자는 아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제기 가능
   - 납세고지
   - 과세처분
   - 추가고지
   - 세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금액의 환급청구
2)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는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 후 1년 이내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년 이내 결정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이의는 받아들여 질 것으로 간주함
3) 조세법원 소송절차
   소송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소송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세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임. 소송이 제기되었어도 과세당국의 세금징수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 계획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재산으로부터의 비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 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음.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 국적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됨.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됨.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최고 세율은 35%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됨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됨.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받음.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함. 거주 납세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함.(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함

4) 이중과세방지

외국인 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됨. 기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인 비용은 소득공제대항임. 외국인 자원 세액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함. 외국인의 도착 또는 출발시 지난년도의 외국이 자원 소득의 결정을 위한 특별한 규칙은 없음.

5) 기타 세금

– 출국세

출국시 거주자는 25만 루피아를 지불함. 이 세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개인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되며 만약 영업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근로자 소득세 공제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영업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세가 여행시 근로자측에 과세되는 경우 연말 근로자 세금에서 완전히 공제됨. 그러므로 출국세는 근로자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적인 선납임. 개인여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당한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타 중요한 소득세는 없음

6) 투자가 고려사항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동일기준 하에 과세됨
– 어떤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면제가 별로 없음
– 인도네시아에서 흡수 통합된 기업간 배당은 면세됨
–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됨
– 부채/자산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음
– 감가상각율은 관대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유예기간, 투자공제 또는 기타 경감조치는 없음
– 종업원의 현물혜택에 따른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님
– 손실은 5년까지 이월되고 특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이월기

간은 8년
- 소유권 또는 영업규정 영속성은 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 손실을 이용하는 필수조건이 아님
- 세무당국은 관련자간 계약에서 소득, 비용을 재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
- 기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는 거주 납세자의 법인세 또는 비거주 납세자의 최종적인 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됨
- 주요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불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음
- 공동관리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통합 납세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각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됨

참고자료

1. 세계 비즈니스 정보 - 인도네시아편, KOTRA 해외조사팀, 2004 (http://www.kotra.or.kr)